#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45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한병도・임오경・김영배

민병덕 • 이해식 • 정일영

서미화 · 강유정 · 이춘석

양부남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관련 국가산단으로써, 2023년 3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 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K-Food'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 등장 속에서 국내 식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	
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
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입주	<u>2030년</u>
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